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소년 전담 보호관찰 기관 설치 등〉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420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소년사법 통합기관 신설	2
참고자료. 보호관찰관 증원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산정 근거 ·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17.

3. 회 부 일 : 2026. 4.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도 모호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III. 검토의견

1. 소년사법 통합기관 신설

□ 개정안은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하 “소년사법 통합기관”이라 한다)을 보호관찰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업무와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등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등).

현 행	개정안
제7조(구성) ① · ② (생략)	제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u>지방교정청장</u> ,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 <u>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u> , <u>지방교정청장</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 ----- -----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관찰관) ① <u>보호관찰소</u>에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u>후단의 기관은 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u> <u>1. 제15조 각 호의 사무 중 「소년법」 제2조에 해당하는자와 관련된 사항</u> <u>2.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u> <u>3.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교육</u> <u>4.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와 보호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u> <u>5.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u> <u>6.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u> <u>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u> 제16조(보호관찰관) ① <u>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지소와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u>

현 행	개정안
② (생 략)	<u>그 지소는 제외한다</u>)----- ----- -----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 및 갇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으며, 각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 내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전국에는 서울보호관찰소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포함하여 18개의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어 있고,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등 40개의 보호관찰지소가 운영되고 있음.¹⁾

□ 개정안은 기존 보호관찰소의 소년 대상 보호관찰 업무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는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소년이 성인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호관찰 집행 단계까지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처우체계를 마련하여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도모

1) 보호관찰소는 대외적으로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하려는 것임.²⁾

<2023년 ~ 2025년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구분		2023	2024	2025
실시 인원	계	93,366	96,668	98,220
	소년	24,484	26,105	26,933
	성인	68,882	70,563	71,287
접수 인원	계	38,837	41,643	41,138
	소년	11,045	11,786	11,928
	성인	27,792	29,857	29,210

자료 : 법무부

- ☐ 다만,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입법취지와 함께 인사 및 제도·예산 소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첫째, 소년별 초기 비행부터 심화범죄까지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년사법 통합기관의 운영 방향에 맞는 인사 정책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사법 통합기관의 인력에는 청소년비행센터 및 보호관찰소에서 전환되는 기존 인력과 추가 필요인력이 있음.
소년별 맞춤형 처우 및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

2) 김혜정, 「성인범 보호관찰의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7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교육적인 측면, 사회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특히 소년법에 나타난 소년보호의 이념은 국가가 소년을 형벌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소년의 부모 된 입장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국친사상(Parens Patriae)에 근거하고 있어서 소년보호의 한 형태인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도 그러한 근본정신에 입각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업무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의 소속이 단순히 소년사범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보호관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소년사범 통합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경찰, 검찰, 법원 및 학교를 비롯한 다기관연계처우를 통해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 요인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등은 미비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년사범 통합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유 플랫폼, 관계 기관 간 업무분장 및 협업 절차 매뉴얼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소년사범 통합기관은 보호관찰 등에 있어 소년을 성인으로부터 분리함에 따라 성인 범죄자를 통한 소년의 범죄학습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설치되지만, 보호관찰 대상인 소년과 그렇지 않은 소년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년 간 범죄학습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소년사범 통합기관은 기존 청소년비행예방

센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검사의 기소처분 전 조사,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등³⁾을 담당하며, 이러한 업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보호관찰 대상자인 소년보다 비행성이 낮은 소년들임.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비행에는 비행친구가 큰 영향을 미치고, 비행친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범죄기술 뿐만 아니라 법 위반이나 비행에 대한 욕구나 태도 등을 학습하게 됨.⁴⁾ 즉 비행성이 낮은 소년에게 소년사범 통합 기관이라는 장소가 법 위반에 대한 동기나 욕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음.⁵⁾

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②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등

4) 홍태경·류준혁,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3호, p116

5) Sutherland(1947)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청소년기의 비행원인으로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범죄 행동은 친밀한 집단 내에서 그 관계의 빈도, 지속 기간, 우선성 등에 따라 학습될 수 있다.

<업무 비교표>

청소년비행예방센터(현행)	소년사법 통합기관(개정안)
○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 조사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등	○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 갱생보호 ○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 범죄예방활동 ○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교육 ○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 ○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 셋째, 소년사법 통합기관 설치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및 청사 확보 등에 따른 재정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 청소년비행센터와 보호관찰소에 배치된 인력 전환에 더하여 총 63명의 추가 필요인력이 계획되어 있음.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 인력 증원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⁶⁾에 따르면 보호관찰 인력 1인당 연간 약 1억 1,000여만 원이 소요된다고 추계하고 있어 개정안으로 인해 약 연평균 69억 원 수준의 추가적인 국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 인력 충원 예산으로 약 20억 원을

6) [참고자료] 보호관찰관 증원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산정 근거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소년사법통합기관 부서 및 정원, 업무량 현황(안)>

구 분	연 번	기관	부서	정원				기존 업무량					
				계	증원	재배치 청비 센터	보호 관찰	계	청비센터 대안 교육	상담 조사	보호 관찰	봉사 수강	조사
합계			27과 (신설23, 재배치4)	423	63	141	219	39,761	7,769	3,454	15,502	8,840	4,196
1 차 기 관	1	서울	3과 (신설3)	29	8	9	12	2,660	841	230	830	489	270
	2	대구	3과 (신설3)	25	8	6	11	2,124	426	309	841	392	156
	3	울산	3과 (신설3)	26	8	6	12	2,113	246	201	704	628	334
	4	인천	3과 (신설3)	33	8	7	18	3,949	556	332	1,263	1292	506
	5	수원	3과 (신설3)	36	8	7	21	3,777	687	123	1,695	910	362
	6	부산	4과 (신설2, 재배치2)	31	7	15	9	1,422	343	182	614	190	93
	7	대전	4과 (신설2, 재배치2)	37	7	14	16	2,742	224	149	1,390	803	176
	8	광주	4과 (신설4)	38	9	12	17	2,538	259	230	1,049	632	368
2 차 기 관	9	서울남부	-	25	-	10	15	3,161	907	426	1,119	455	254
	10	의정부	-	16	-	6	10	2,174	696	85	902	297	194
	11	춘천	-	11	-	6	5	831	318	172	211	76	54
	12	안산	-	23	-	7	16	2,159	274	48	1,130	505	202
	13	부산동부	-	15	-	6	9	1,634	369	223	668	234	140
	14	창원	-	18	-	6	12	2,243	376	227	691	587	362
	15	청주	-	16	-	6	10	1,479	233	137	655	263	191
	16	천안	-	16	-	6	10	1,840	283	143	779	503	132
	17	전주	-	15	-	6	9	1,811	418	145	582	361	305
	18	순천	-	13	-	6	7	1,104	313	92	379	223	97

자료 : 법무부

- 청사의 경우 18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중 6개의 기관은 기존의 청사를 활용하고, 그 외 10개의 기관은 새로운 청사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법무부는 청사 임차 및 기존 청사 리모델링 등 시설 조성을 위하여 약 2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함.

<소년사법통합기관 시설 조정(안)>

구분	현행	계획	필요 예산	기관
유형 1 (임차)	임차	새로운 임차청사	보증금, 임차료, 공사비 등	전주, 천안, 울산, 창원, 의정부, 대전, 서울북부, 서울남부, 수원
	임차	현 임차청사 활용	공사비 등 시설조정비	춘천, 순천, 부산동부
유형 2 (자체)	자체	추가 임차청사	보증금, 임차료, 공사비 등	인천
	자체	현 자체청사	공사비 등 시설조정비	청주, 부산, 대구

자료 : 법무부

□ 한편, 소년전담 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행법상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 중 필요한 사항을 소년전담 기관의 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제19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 결정 전에 필요한 조사를 규정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

○ 이 외에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고⁸⁾, 구인⁹⁾ 또는 긴급

7)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8)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

구인¹⁰⁾ 등 보호관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절차상 권한을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소년전담 기관의 장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15조의2에서는 소년전담 기관이 관장하는 사무로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및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청소년”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¹¹⁾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협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 9) 제39조(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10) 제40조(긴급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39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 1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둘째, 안 제15조의2제4호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와 보호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맥상 교육 대상은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로 보이므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75

- ☐ 증원인원(40명) 인건비 등과 관련된 비용은 공무원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임
- 직급별 연봉액은 법무부에서 제출한 2022년 보호관찰관 직급별 평균 연봉 자료를 참고하고, 직급별 인원은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추정
 - 피부착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업무는 6급 이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음

[표 1] 증원인원에 대한 보수: 2022년

(단위: 백만원)

구분	직급별 보수				총 합
	6급	7급	8급	9급	
1인당 연봉액(A)	77	65	49	37	-
증원인원(B)	8	11	11	10	40
보수(A×B)	616	717	541	374	2,248

자료: 법무부

-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 기관부담금 비율, 법무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사업비 비율(6.2%, 60.2%) 및 자산취득비를 반영한 인건비 등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 증원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보수	2,311	2,378	2,450	2,526	2,604	12,269
기관부담금	302	314	327	340	350	1,634
기본경비	142	147	151	156	161	756
사업비	1,392	1,433	1,476	1,522	1,569	7,391
자산취득비	174	-	-	-	-	174
합계	4,322	4,272	4,404	4,543	4,684	22,2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관 40인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22억원(연평균 44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주: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의안번호 2114649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재구성